

심 사



## **24.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정 2010. 07. 28  
개정 2011. 01. 17  
개정 2012. 11. 05

# 태권도심사관리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기원 정관 제46조에 의한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이하 “국기원”)의 태권도승품·단심사(이하 승품·단심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 세계 태권도인의 심사 관리의 체계화 및 표준화를 도모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유일하게 통용되는 태권도 공인단증으로서의 권위와 가치를 구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태권도승품·단심사(이하 “승품·단심사”)에 관하여서는 법령, 정관 및 기타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 제2장 심 사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심사”라 함은 태권도 수련자가 국기원 승·품·단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평가 과정을 말한다.
2. “심사시행”이라 함은 태권도 승·품·단 심사 응시자에 대한 행정업무와 실기 및 이론 심사를 직접 시행 하는 것을 말한다.
3. “심사추천”이라 함은, 심사응시와 심사업무 처리를 위한 교육적, 행정적 절차로서 심사와 관련된 태권도단체, 기관 및 지도자의 권한과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4. “품”이라 함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15세 미만인 자에게 부여되는 태권도 자격을 말한다.
5. “단”이라 함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15세 이상인 자에게 부여되는 태권도 자격을 말한다.
6. “명예단” 이라 함은 태권도발전 및 공헌자에 대하여 수여하는 단을 말한다.
7. “추서단” 이라 함은 태권도에 대한 공로가 지대한 태권도고단자가 타계 하였을 경우 수여하는 단을 말한다.
8. “태권도 사범”이라 함은 태권도 4단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자가 국기원 소정의 지도자교육을 이수하고 사범자격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9. “국가협회”라 함은 국가올림픽위원회(NOC)에 가맹된 각국의 태권도단체 또는 국기원이 인정한 단체를 말한다.
10. ‘태권도단체’라 함은 태권도 수련도장(클럽)의 일정 규모 이상을 보유한 단체로서 국기원이 인정한 단체를 말한다.

11. "기관"이라 함은 경찰, 군 등 특수 기관이 국기원의 승인을 득하여 별도의 심사를 시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4조(심사구분과 과목)** ① 태권도심사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승품심사
  2. 승단심사
  3. 특별승단심사
  4. 명예단심사
  5. 추서단심사
- ② 태권도심사 과목은 실기·이론 및 면접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③ 제2항의 심사과목에 관한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조(심사수수료)** ① 태권도 승품·단 심사에 응시하는 수련자에게 소정의 심사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 ② 심사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분 한다.
1. 발급수수료는 승품·단 심사에 따른 등록 및 발급에 수반되는 행정비용·자재비용·유지관리비용 등의 직접경비와 홍보·연구개발 등의 간접비를 포함한다.
  2. 시행수수료는 승품·단 심사 시행에 따른 장소대관·인건비·행정비용 등의 직접경비와 시행에 따른 교육비용, 심사관련 연구비용, 심사관리비용 등에 수반되는 간접비를 포함한다.
- ③ 위임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제2항 2호에 대하여 국기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위임받은 국가협회, 태권도단체, 기관은 발급수수료와 시행수수료 이외의 기타 비용을 부과하고자 할 때는 항목별로 구분, 고지하여 징수하도록 권고한다.
- ⑤ 제5조 1항에 따른 품·단별 심사수수료는 차등을 둘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 ⑥ 국가별 사정에 따라 심사수수료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⑦ 국기원은 위 제2항 심사수수료 중 발급수수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6조(품·단의 위계 및 응시자격)** ① 태권도 품·단의 위계는 다음과 같다

1. 품의 위계 : 1품부터 4품까지
  2. 단의 위계 : 1단부터 9단까지.
- ② 승품·단 자격취득에 있어 연한·연령 및 보수교육 등의 기준으로 응시자격을 정할 수 있다.
- ③ 국기원 및 태권도발전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 또는 태권도 보급의 정책적인 사유 등으로 응시자격을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 ④ 제2항과 제3항의 응시자격 및 특례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7조(응시의 제한)** 징계를 받고 그 징계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8조(심사시행)** ① 국기원은 매년 승품·단 심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심사시행단체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한다.

1. 위임받은 국가협회, 태권도단체 및 기관은 심사시행에 관한 연간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국기원에 보고해야 한다.
  2. 승품·단 심사 시행을 위해 정해진 심사장과 제반시설을 갖추어 시행한다.
  3. 승품·단 심사는 국기원이 제시한 심사과목을 준수하되, 위임받은 국가협회, 단체, 기관 등의 사정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평가를 위해 심사평가 기준을 준수하여 시행한다.
  5. 심사시행에 필요한 감독관 · 심사평가위원 · 진행요원 · 의무요원 등을 구성하여 시행한다.
  6. 심사평가위원을 비롯하여 진행요원 · 응시자는 국기원이 지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7. 심사시행에 따른 응시자의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8. 승품·단 심사에 따른 심사예식을 준수하여 시행한다.
- ③ 승품·단 심사시행은 태권도 사범 자격을 갖춘 지도자가 직접 지도한 수련생을 심사추천 함으로써 그 절차가 시작되며, 승급심사는 태권도 사범 자격을 갖춘 자가 시행할 수 있다.

### 제3장 권한 및 의무

**제9조(권한 · 위임)** ① 승품·단 심사에 관한 권한은 국기원에 속한다.

② 국기원은 승품·단 심사 시행에 관한 권한 중 일부를 국기원이 인정한 국가협회 및 태권도 단체, 기관, 태권도장 운영 사범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승품·단 심사 시행을 위임받은 국가협회 및 태권도단체, 기관은 국기원과 위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승품·단 심사 시행을 위임받은 국가협회 및 태권도단체, 기관, 도장 운영 사범은 심사시행에 따른 권한을 갖는다.
3. 승품·단 심사 시행권한을 국가협회 및 태권도단체, 기관에 위임한 경우 동일 지역 내 타 태권도단체, 기관 또는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사범에게 심사시행을 허용하지 않는다.
4. 승품·단 심사 시행권한을 위임받은 국가협회, 태권도단체, 기관은 회원이 받은 징계 등의 사유로 사범의 수련생에 대한 심사응시 신청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5. 승품·단 심사 시행에 관한 권한과 의무를 위임 받은 국가협회, 태권도단체, 기관은 제3자(단체)에게 재 심사시행을 위임 하거나 심사시행 위임을 정지 및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국기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위임받은 태권도단체가 심사시행 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타 태권도단체, 기관, 도장 운영 사범에게 승품·단 심사시행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심사시행 권한이 있는 국가협회 및 단체, 기관이 국기원으로부터 심사시행 위임 철회 또는 정지 통보를 받았을 경우, 국기원 또는 국기원이 지정하는 단체가 승품·단

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책무)** ① 국기원은 승품·단 심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승품·단 심사 시행을 위임받은 국가협회, 태권도단체, 기관, 도장 운영 사범은 위임받은 사항과 시행에 대한 제반 책임을 진다.

③ 국기원과 승품·단 심사를 위임받은 국가협회·태권도단체·기관·사범·응시자는 태권도심사관리규정 및 태권도심사운영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④ 국기원은 승품·단 심사 활성화를 위해 승품·단 심사시행 위임단체에 지원 협조한다.

⑤ 국기원은 승품·단 심사의 공정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사감독관 및 심사위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⑥ 제2항에서 제4항까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승품·단 심사 위임의 취소 등)** ① 다음의 경우는 승품·단 심사위임을 정지·취소할 수 있다.

1. 국기원 또는 위임받은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태권도에 대한 위상을 추락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2. 임원의 갈등 및 분쟁으로 승품·단 심사를 시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태권도심사관리규정, 태권도심사운영규칙 및 승품·단 심사위임계약서를 위반한 경우.

4. 위임단체가 국기원의 승인 없이 제3자(단체)에게 심사시행 업무를 재 위임한 경우.

5. 조직력 미약 등의 사유로 승품·단 심사업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임받은 단체가 재 위임단체에 대하여 위 제1항 각호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정지·취소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국기원은 직권으로 정지·취소시킬 수 있다.

## 제4장 품·단증 교부 등

**제12조(품·단증의 교부)** ① 태권도심사관리규정 및 태권도심사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품·단 심사에 합격한자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단증을 교부한다.

② 품·단증의 발급은 "국기원장의 명의"로 교부한다.

③ 품·단증 외 명예단 및 추서단을 발급할 수 있다.

④ 품·단증의 분실 등으로 인하여 품·단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재교부 할 수 있다.

**제13조(품·단증의 취소 등)** ① 다음의 경우에는 품·단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품·단증을 취득한 경우

2. 태권도와 국기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② 위 1항에 의거 그 자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

야 한다.

③ 당사자가 소명을 포기하거나 상별위원회에서 그 소명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한다.

**제14조(기타 행정 사항 등)** ① 품·단증 신청 등 행정절차는 국기원이 정하는 문서 및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승품·단 심사와 관련한 온라인 행정처리는 국기원 정보화처리 기준에 따른다.

③ 승품·단 심사와 관련한 기타 행정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5장 각종 위원회

**제15조(심사평가위원회)** ① 승품·단 심사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심사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심사평가위원회는 저단자심사평가위원회와 고단자심사평가위원회로 구분한다.

③ 승품·단 심사 시행을 위임받은 국가협회 및 태권도단체는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기원에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의 심사평가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심사진행요원을 둘 수 있다.

⑤ 심사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심사심의위원회)** ① 품·단증 발급을 위해 승품·단심사 시행에 따른 심사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승품·단 심사와 관련한 포상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7조(감독관)** ① 승품·단 심사의 공정한 심사관리를 위하여 감독관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② 감독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부 칙 <제정 2010. 7.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개정 2011. 1.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제2조(경과조치)** 국내의 경우 이 규정에 따른 위임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종전



의 심사관리규정에 따른다.

**부 칙** <개정 2012. 11.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